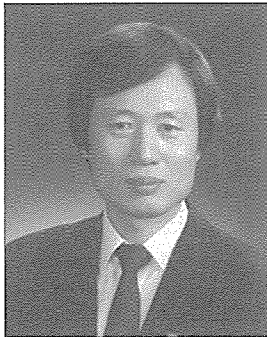


#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최재갑/경북치대 구강내과



지난 1월 9일 치러진 금년도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치과계에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이는 아마도 국내 치대 졸업생의 합격률이 90.9%에 이른 반면 외국 치대 졸업생의 합격률이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과 같이 외국 치대 졸업생이 대거 합격하는 변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국내 치대 졸업생과 외국 치대 졸업생간의 변별력이 매우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근래에 치러지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외국 치대 졸업생의 합격률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합격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치과계가 일희일비를 거듭하고 있다. 어떤 해에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여 외국 치대 졸업생 뿐만 아니라 국내 치대 졸업생의 합격률도 너무 저조하여 인턴 수급에 차질을 빚고 불합격한 학생들이 항의를 하는 등 한바탕 흥역을 치르기도 하였다.

## 확고한 평가 기준 마련

국가가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도를 운

영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를 위해 국가 시험을 통하여 의료인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국가 시험은 국가가 요구하는 의료인의 일정한 수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지적되어야 할 문제점은 평가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즉 치과의사 국가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해마다 과목별 난이도, 출제의도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국가 시험으로서의 권위와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치과의료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의 반영이라는 현실적 측면과 치의학의 발전이라는 미래지향적 목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치과의사 국가고시의 평가 기준은 당연히 치과대학의 교육목표나 과목별 학습목표와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국가시험제도의 개선은 마땅히 치의학 교육의 정상화 혹은 질적 향상이라는 명제와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치의학 교육의 목적이나 교과목의 구성, 과목별 학습목표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며 이러한 것을 전담할 공식적인 기구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평가기준이나 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국가시험이 치의학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단순한 행정적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치의학 교육과 국가시험에 관한 연구만을 전담할 상설 기구의 설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칭 '치과대학협회' 혹은 '치의학교육협의회'에서 이러한 연구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과 대학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의학교육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그리고 '한국의학교육협회' 등을 통해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으며, 또한 의사국시원을 설립하여 의사국가 시험을 통해서 의과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음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때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 2월 5~6일 치협 주관으로 개최된 '제1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개발 연찬회'에서 국가 시험과 치과대학의 과목별 학습목표를 서로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국가 시험의 본래적 취지를 살리고 치과대학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꽤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며 이 문제에 관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

##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요구

두 번째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에 관한 문제이다. 치과 의사 국가시험은 치과 의사로서의 임상적 진료능력을 국가가 공인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치과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정 수준의 진료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치과 진료의 많은 부분이 섬세한 수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치과 의사 국가시험에는 반드시 실기시험이 포함되어야만 그 평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의과대학 졸업생의 대부분이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졸업 후 재교육과 그에 대한 평가의 기회를 다시 가지는 반면에 치과대학 졸업생의 다수는 그러한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독자적인 진료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 의사 국가시험에서 실기시험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시행 규칙에는 의료인의 면허시험에 대한 규정에서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치과계에서 관계 당국에 실기시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의료인의 모든 국가시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가칭)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금년에 새로 설치되는 것을 계기로 향후에는 국가시험 업무의 상당 부분을 해당 의료 단체에서 관장하게 된다고 하니 차제에 치과 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치과 의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행과 같은 일회성의 평가보다는 다단계 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에서 실시하는 치과 의사 면허시험처럼 1부, 2부, 3부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인데, 1부 시험은 치과대학 본과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주로 기초치의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부 시험은 1부 시험에 합격하고 치과대학 본과 4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주로 임상치의학에 대한 이론적 평가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3부 시험은 1부와 2부에 합격한 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해 임상실기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치과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그밖에도 치의학 교육의 전반적 내실화, 특히 기초치의학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문제해결형의 통합 교과적 문제의 출제가 용이해지고, 외국의 부실한 치과대학 유학생의 국내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 과목과 배점 및 과락제도의 개선 필요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행 국가

### 한국 의사국가시험원 연혁

1977년 12월 19일

한국 의과대학장협의회 전신인 한국 의학교육협회가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개최한 제11회 의학교육학회 세미나에서 의사국가시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전담기구의 설립을 촉구

1986년 4월 27일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 의과대학장협의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국가시험 개선방안'의 하나로 전담기구의 설립을 건의함으로써 국시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거론

1988년 5월

(가칭)한국 의사국가시험원 설립계획(안)을 세움(설립취지문, 설립추진 경과, 법인 명칭(안), 법인 기구(안), 정관(안), 사업계획(안), 인력 증원 계획, 예산(안))

1988년 6월 29일

(가칭)한국 의사국가시험원 발기인 창립 총회

1990년 1월 11일

의사국가시험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조사 실시

1990년 3월 12일

의료계를 대표하여 대한의학협회가 의사국가시험원 설립 건의문을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

1991년 1월 5일

두 번째 의사국가시험원 설립 신청을함과 동시에 보건사회부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의사국가시험원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 마련

1991년 12월 29일

세 번째 의사국가시험원 설립 신청을 하였고 보건사회부는 이를 받아들임

1992년 5월 16일

재단법인 한국 의사국가시험원 개원

1992년 11월

'한국 의사국가시험원 소식' 창간호 발행

1992년 12월 29일

국시원 시험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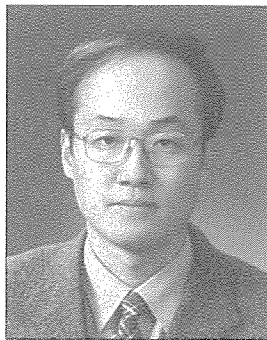
시험의 과목과 배점 및 과락 제도에 있어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형의 통합 교과적인 출제가 바람직하지만 현행과 같은 과목 편성에서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특히 배우지 2년 이상 경과한 기초 치의학 과목을 국가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 의사나 한의사의 국가시험에도 기초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초치의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상 부분과 분리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현행 국시는 과목간의 배점에 있어서 편차가 너무 커서 학생들이 배점이 적은 일부 과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구강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진료능력이 결여된 절름발이 치과의사를 양산할 우려마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기능과 과학이라는 치의학의 두 가지 축이 서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치과의사들로 하여금 포괄적인 환자 평가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목과 배점, 그리고 과락 제도가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료인의 수급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인해 오로지 국가시험의 난이도로써 의료인력의 수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국민에 대한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본래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그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치과의료 인력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치과의사 국가시험제도 개선방안

마득상/강릉치대 예방치과



치과의사 국가시험이란 국가가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하여 구강진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할 일반치과의사(General Dental Practitioner)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판정하는 국가기능이다.

일반치과의사의 질이 구강보건 진료의 내용과 질을 좌우하고, 구강보건 진료활동에 영향을 미쳐 국민 구강건강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치과의사 국가시험제도가 필요하다. 특성을 달리하는 지역사회는 각기 다른 내용과 질량(質量)의 구강보건 진료를 필요로 하고 요구한다. 그러므로 나라마다 국가 단위나 주별로 치과의사의 질을 관리하고, 국가의 실정에 맞도록 건설하게 운영하려 한다.

일반치과의사의 질은 주로 양성과정에서 의해 결정되므로 일반치과의사를 양성하는 치과대학에서는 실정에 적합한 양질의 일반치과의사를 양성하도록 대학별 치과대학 교육목적 설정하고, 설정한 대학별 치과대학 교육목적에 따라 치과대학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

한 원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별 치과대학 교육목적을 설정하여, 치과대학 교육의 지침으로 제시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관리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치과대학교육의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치과의사 질(質)관리기준인 국가별 치과대학 교육목적에 따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관리하여야 하고 국가시험 과정에 1차 구강진료 능력 및 구강보건 지도능력을 가급적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며,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치과대학 교육에 대하여 안내자적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점

현행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1952년 이래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립보건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제2차 보건복지제도 개혁위원회'의 자료(1996.8.)에 의하면 국립보건원 주관의 문제점으로 국가시험 전문관리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을 들고 있다. 즉 출제문항 개발 및 출제문제에 대한 난이도, 변별력 등 문제평가가 미흡하여 문제 자체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못하고 있고, 문제는 행에 보유하고 있는 문제의 수준별 분포가 단순 암기형 문제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임상진료 능력 평가가 부족하며,